



[2019. 2. 1.] [2019 - 37 , 2019. 2. 1.,]

(), 044 - 201 - 6804, 6827

1 () 「 」 (" ") 20 2
6 (" ") 19

2 ()
1. " " 5 가

3 () 1 .
2 .

4 () 「 」 2019
1 1 3 (3 12 31)

< 2019 - 37 , 2019.2.1.>

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

1. 겉모양

- 가. 외관은 깨끗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부위 등 위험부위가 없어야 한다.
- 나. 구조는 찌그러짐, 비틀림 등의 변형·파손 등이 없어야 하고,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.
- 다. 내용물로 인하여 쉽게 손상되거나 내용물과 반응하여 유해한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아야 한다.
- 라. 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, 분사 후 흐름현상이 없어야 한다.
- 마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1)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
 - 2) 유리용기
 - 3) 별도 용기가 없는 경우

2. 강도 및 누수

- 가. 용기 강도 시험을 실시할 때 마개 또는 몸체 등 용기의 파손이 없어야 하며 제품의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아야 한다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- 1)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
 - 2) 유리용기
 - 3) 별도 용기가 없는 경우
- 나. 용기 누수 시험을 실시할 때 제품의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, 제품의 내용물이 액체인 제품의 용기에 대해 실시한다. 다만, 다음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- 1)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
- 2) 개봉 후 재잠금이 불가능한 1회용 포장 용기

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기준

1.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

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.

가. 살생물제품에 다음 물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

- 1) 메틸알코올 2 % 이상
- 2) 디클로로메탄 1 % 이상

나. 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(국립환경과학원 고시)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분류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

- 1) 급성독성 구분 1~3
- 2) 피부 부식성 구분 1
- 3) 특정 표적장기 독성-1회 노출 구분 1
- 4) 특정 표적장기 독성-반복 노출 구분 1
- 5) 흡인 유해성 구분 1

2.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 대상

가.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1) 「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(환경부 고시)에 따른 사용대상자가 전문사용자인 제품
- 2)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개봉할 수 있는 제품
- 3) 개봉이 불가능한 분사형 제품
- 4) 개봉 후 내용물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제품
- 5) 실제 중량 15 kg 이상의 제품 4

6) 제품의 특성상 별도의 안전용기나 포장이 어려운 제품

3.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

살생물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은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.

가. 재봉함이 가능한 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「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」, KS T ISO 8317, 16 CFR 1700, CSA-Z76 및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른다.

나. 재봉함이 불가능한 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

EN 862 및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른다.